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업무 위탁기관 변경 고시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및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안전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의 조사·검증 등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변경 위탁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19일
국토교통부장관

1. 위탁대상 업무

- 가.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
- 나.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2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안전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의 조사·검증 등의 업무

2. 위탁기관

가.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 업무

- 종 전 : 메리츠화재해상보험(주), 한화손해보험(주), 롯데손해보험(주), 흥국화재해상보험(주), 삼성화재해상보험(주), 현대해상화재보험(주), KB손해보험(주), DB손해보험(주), AXA손해보험(주), 하나손해보험(주), 신한EZ손해보험(주)
- 변 경 :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

나. 채권정리위원회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·검증 등의 업무

- 종 전 : 손해보험협회
- 변 경 :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

3. 위탁변경 일자

- 2023년 1월 2일